

공장설립 관련 제도

- I. 공장설립의 개념과 절차
- II. 공장설립 규제 및 허용행위

I. 공장설립의 개념과 절차

1. 공장 및 공장설립의 정의

(1) 공장의 개념(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1) 제조업(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제조업이란 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의미함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 제10차 개정)에 의한 제조업("C", 10 ~ 34)

■ 한국표준산업분류 ■

대분류	업 종 구 분	중분류	대분류	업 종 구 분	중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L	부동산업	68
B	광업	05~0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C	제조업	10~34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6~39	P	교육 서비스업	85
F	건설업	41~42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G	도매 및 소매업	45~4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H	운수 및 창고업	49~52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97~98
J	정보통신업	58~63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K	금융 및 보험업	64~66			

○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예시 (5자리 분류코드)

C	2	3	1	9	2
대분류 (Section)	중분류 (Divisions)		소분류 (Group)	세분류 (Classes)	세세분류 (SUB-Classes)

■ 주요 개정 내용 ■

대분류 이동	부동산 이외 임대업(69), 수도업(36)은 대분류 이동
중분류 신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대분류 S(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C(제조업)으로 이동 후 중분류 신설(34)
명칭 변경	대분류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는 정보통신업으로 명칭 변경
분류 신설	국정과제 및 주요 부처 정책과제 등으로 추진 중인 미래 성장산업 관련 분류 신설 [주요 신설 산업] 바이오연료, 탄소섬유, 에너지저장장치, 디지털적층성장형기(3D프린터), 자동차구조 및 장치변경(튜닝), 무인항공기(드론)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모바일 게임SW 개발 및 공급업 등
분류 조정	국가 기간산업 및 동력산업 중 성장산업을 세분화하고, 저장장 사양산업은 분류 통합 [분류세분] 김치, 도시락 및 가공식품, 디스플레이용 유리, 반도체, 센서류, 전기회로, 개폐·보호·접속장치,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 등 [분류통합] 광업, 청주·코르크 및 조물제품·기계 및 기계부품·선박·악기·나전칠기 제조업 등

2) 공장의 범위(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다음의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부대시설의 종류 ■

산업집적법상 공장의 범위에 속하는 『부대시설』이란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시설(시행규칙 제2조)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포함) 및 환경오염(수질, 대기, 소음진동)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 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만 해당),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8의2. 영 제59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그 외 법률에서는 공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적용함

구 분	정 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건축법상 공장은 건축물 용도의 한 종류이며, 산업집적법상 공장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되는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대상]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옥외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 포함, 산업집적법 제28조의 도시형 공장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법인세 과세 특례 및 감면 대상]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3) 도시형 공장(산업집적법 제28조)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장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0의 1종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연간 합계 (1종) 80톤 이상 (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의 1종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 1일 폐수배출량 (1종) 2,000㎡ 이상 (2종) 700㎡ 이상 2,000㎡ 미만 (3종) 200㎡ 이상 700㎡ 미만 (4종)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②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

■ [별표 4] 해당 업종 ■

분류번호	업 종 명	분류번호	업 종 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7329	기타공학기기 제조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또는 제13호사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공장 설립하는 경우 제외)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 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중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으로 개발하는 경우 제외) 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인 사업

4)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법 제4장의2)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지식산업센터의 요건(법 제2조 제13항, 영 제4조의6)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300퍼센트 이상이 어려운 경우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융적률을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지상층만 해당)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법 제28조의 5, 영 제36조의4)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업단지 내) 관리기관이 인정 (산업단지 밖)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
3.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기 위한 시설
 -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지원시설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함
 -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으로 일정기준 면적 이하의 시설 (산단 내)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이 설치되고 해당 상점의 건축면적이 3천㎡ 이하인 시설 (산단 밖) 상점의 건축면적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 오피스텔(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 관리기본계획에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면적 범위(영 제36조의4)	
총 면적은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하되, 근린생활시설 및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의 총 면적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됨	
1. (산업단지 안) 지식산업센터로서 그 해당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안)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아래 면적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더한 면적으로 함	
•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 중 작은 면적	
•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 중 작은 면적	
•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 중 작은 면적	
나. (복합구역 안)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2.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로서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 안)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 밖)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로서 도시형공장의 시설에 한하여 설치 가능함
-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음

(2) 공장설립의 정의(산업집적법 제13조)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포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포함)·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

□ 공장설립 등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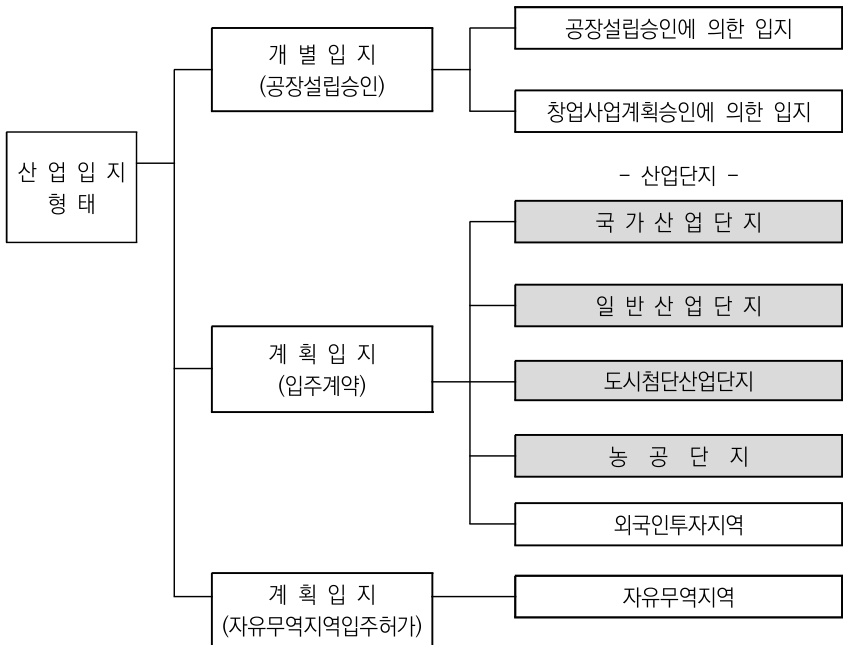
구 분	정 의
신설 (법 제2조21호)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법 제2조22호)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는 공장 증설로 보지 아니함
※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전 (영 제25조3항)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공장의 이전승인 : 수도권내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공장이전의 확인 : 과밀억제권역에서 유치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 사실 확인 가능
업종변경 (법 제2조23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이 때의 업종은 법 제8조의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의미함
제조시설설치 (법 제14조의3)	아래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 법 제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법 제14조의3 제2항)
공장입지 기준확인 (법 제9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토지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 가능지역과 공장설립 가능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음

2. 공장설립 입지유형

(1) 산업입지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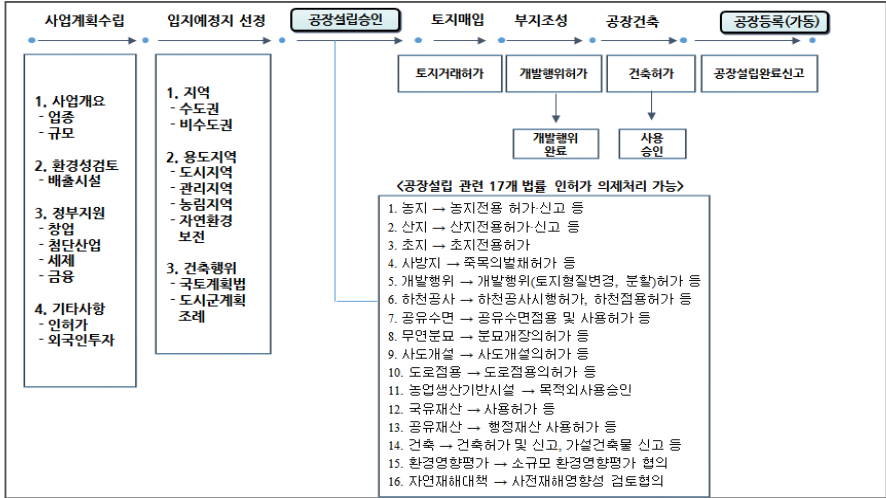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개별입지	계획입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상 여건, 지리적 요인, 용지가격 등 각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와 기업가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입지
계획입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선정하고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입지로서 별도의 부지조성(개발) 인·허가 불필요

(2) 산업입지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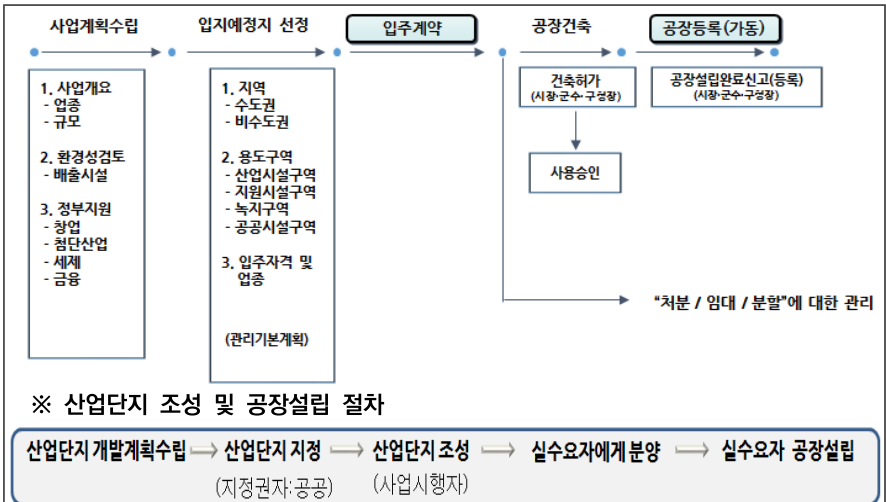


(3) 입지유형별 공장설립 절차

□ 개별입지(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 산업단지(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3. 공장설립 절차(산업집적법)

(1) 개별입지의 공장설립(공장설립승인)

1) 공장설립 시 사전 검토사항

- 당해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해당 여부와 업종명·분류번호
-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규모 : 공장용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
-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배출시설 설치 여부
- 중소기업 창업자 해당 여부(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술도입신고 대상 여부
- 세제·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첨단산업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
- 개별법상의 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

2) 공장설립 승인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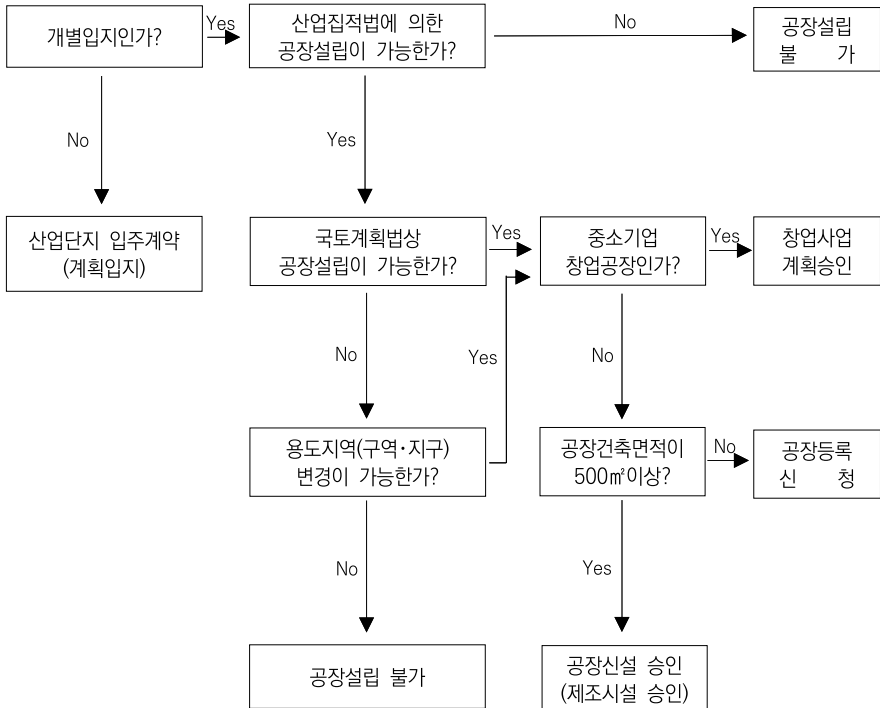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	공장 설립자	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 건축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 미만도 승인 신청 가능함)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 사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3) 공장설립 절차도

구 분	진 행 순 서	비 고
공장입지 선정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	•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입지조사·분석(지역·업종) ↓	•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입지결정 ↓	• 입지적정성(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 (인·허가)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	
	구비서류준비 ↓	
	토목측량설계 ↓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신청 (공장설립민원실·산업단지관리기관) ↓	〈공장설립승인시 내외부 협의 및 검토〉 • 실무총합심의회 • 일정기준 이상은 각종 심의 및 협의 (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②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③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 한방 및 지목변경 완료여부
	공장설립완료신고 ↓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공장등록 공장등록증 발급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 사항과의 일치 여부 확인 • 완료신고 접수후 3일내 통보

4) 공장설립 승인 여부 검토

-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토지이용제한, 공장건축 가능여부, 환경 관련 규제 등을 확인하고 검토함



5) 공장입지의 기준

□ 공장입지의 기준과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법 제8조)

공장입지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농진흥법」, 「대기환경보전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전원개발촉진법」, 「초지법」, 「택지개발촉진법」, 그밖에 공장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 공장면적률')과 그 적용 대상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주어야 함(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매년 2월 말까지 공장설립 가능 지역과 업종 등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음

□ 공장건축면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공장설립승인대상 공장건축면적(영 제18조의2 제1항)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제조+부대)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법 제8조)

$$\text{※ 기준공장면적률} = \text{기준공장건축면적} / \text{공장부지면적} \times 100$$

- 용지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유하여 실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종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공장을 건축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에 대해 기준일(2014년 1월 1일)로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영 제59조의2)

기준공장면적률 예시(공장입지기준고시)

[별표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세분류		세세분류		기준공장 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KSIC)	분류 번호	업종명(KSIC)	
1011	도축업	10110	도축업	12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2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

※ 기준공장건축면적 산출 예시

-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 1개의 단위공장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 :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
- * 업종별 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공장건축면적/전체공장건축면적
- * 업종간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산출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제외(령 제1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 공장에 활주로·철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집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 「산업집적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녹지구역 안에 있는 용지
-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
- 공장부지를 임차한 자가 공장을 건축하는 용지

6)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

□ 공장설립등의 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13조 제1항)
-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하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및 신고대상 ■

절 차	변 경 사 항
변경승인 (시행규칙 제7조)	•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승인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부지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제외) • 공장건축면적(승인건축면적의 20%이내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감소하는 경우 제외)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 안에서 변경 제외)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7조의2)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시) • 세부업종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토지 관련 법령의 기준·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시행규칙 제6조)
-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함(법 제13조의5)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 2년)이 지난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제조시설설치승인

-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법 제14조의3)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 제조시설설치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절 차	변 경 사 항
변경승인 (시행규칙 제8조의4)	• 승인받은 제도시설면적의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8조의5)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시) • 세부업종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도시설설치 승인을 받거나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도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법 제14조의4)

제도시설설치승인의 취소
• 제도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도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제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산업단지의 공장설립(입주계약)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법 제38조 제1항)
-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법 제13조 제2항)
- 입주계약사항 중 일정사항(아래표 참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법 제38조 제2항)

■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

절 차	변 경 사 항
입주계약 사항의 변경 (시행규칙 제35조)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업종(공장의 경우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일 것 -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의 20% 이내 -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 - 공장(사업장) 소재지(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한 입주기업체가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분양시 입주계약 절차 ■

절 차	주 요 내 용
입주기준 공고 (15일 이상)	- 공고내용 :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 - 공고방법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15일 이상), 필요시 일간신문 공고 병행
↓	
입주계약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입증 서류
↓	
입주심사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시 입주우선순위 등에 의거 입주대상자 선정

■ 양·수도,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한 취득시 입주계약체결 절차 ■

절 차	주 요 내 용
입주계약신청	• 소유권 이전 종료 후 입주(단, 양·수도는 소유권 이전 전)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입증 서류
↓	
입주심사	•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	
입주계약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간 검토 후 관련규정(산업집적법, 관리기본계획 등)에 적합시 입주계약 체결

(3) 공장등록(개별입지·산업단지 모두에 해당되는 절차)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법 제15조)

□ 공장의 등록

-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장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2조)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함

- 공장설립승인 대상 외 공장(500㎡ 미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16조 제2항)
-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법 제16조 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해 필요사항을 적은 등록사실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 등을 현지 확인하여 승인내용과 부합하는 경우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등록·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공장등록대장 관리 및 공장등록의 증명 등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관할 지역 외의 공장 등에 대한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 등을 발급할 수 있음

※ 소기업 공장설립 관련 특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제1항)

소기업 중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제조업소·공장)의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간주

- 사업장의 면적 -

- * 수도권 :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 + 수평투영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 + 각 층 바닥면적(사무실 및 창고)
- * 수도권 외 지역 :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 + 수평투영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

□ 공장등록변경 신청

- 등록한 사항 중 일정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함(법 제16조 제4항)
-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봄

■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

절 차	변 경 사 항
등록변경 (시행규칙 제11조)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2.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3. 공장건축면적(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4.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5. 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 6. 세부업종변경사항 7. 승인대상 외의 등록된 공장의 업종변경 및 공장의 증설 * 업종 :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 공장의 증설 : 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공장의 등록취소

주 요 내 용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및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발전설비의 수평 투영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함) * 해당 공장의 제호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 • 공장등록 시 불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공장설립 처리기간

공장설립등의 승인·입주계약	공장등록
• 공장설립등의 승인 : 20일 이내 - 신청내용 전부가 승인권자의 권한인 경우 : 14일 이내 - 의제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 : 7일 이내 • 입주계약 체결 결정 : 5일 이내 -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 10일 이내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 20일 이내	• 공장설립완료신고 -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 및 기계·장치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부분등록 및 건축물 등록도 가능) • 공장등록 사실 통보 - 공장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의제처리시 20일) - 공장설립 완료신고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의제처리시 20일)

(4) 공장설립(창업계획) 단계별 의제처리 내용

단 계	의제대상 인·허가
공장설립 승인시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 인·허가 (산업집적법 제13조의2 제1항)	- 농지전용의 허가, 농지전용의 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초지전용의 허가 - 사방지의 축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점용의 허가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분묘 개장의 허가 - 사도 개설 등의 허가 - 도로점용의 허가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기재내용의 변경, 가설 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공작물 축조의 신고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단 계	의제대상 인·허가
공장설립 승인자의 사업 허가·신고 (산업집적법 제13조의2 제3항)	-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 고압가스 제조허가,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 -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의 조건부허가
공장의 건축허가 (산업집적법 제14조)	- 도로점용의 허가 - 하수도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설치 신고 -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 소방 관련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만 해당)의 허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공작물축조의 신고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 화학류간이지장소 설치의 허가 -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허가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산업집적법 제14조의2)	-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 「소방시설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대기, 폐수 배출시설의 사용개시신고 -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시설 또는 설비의 완성검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 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 환경오염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단 계	의제대상 인·허가
공장등록 (산업집적법 제16조 제6항)	- 인쇄사의 신고 - 양곡가공업의 등록, 인삼제조업의 신고 - 사료제조업의 등록, 비료생산업의 등록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허가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 -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의 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정수기 제조업의 신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 의지·보조기 제조업의 개설 사실 통보 - 골재채취업의 등록,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공장의 변경등록 (산업집적법 제16조 제7항)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 위험물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지위승계신고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지위승계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신고 -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 액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지위승계신고 -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4. 공장설립지원센터

(1) 설치배경 및 목적

-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이용 및 환경 등 관련법령의 범위가 넓고 복잡하여 기업인이 직접 공장설립절차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 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 알선 및 세금 감면의 안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 업무를 포함)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함(법 제7조의2)

(2) 운영현황 및 주요 업무

1) 공장설립지원센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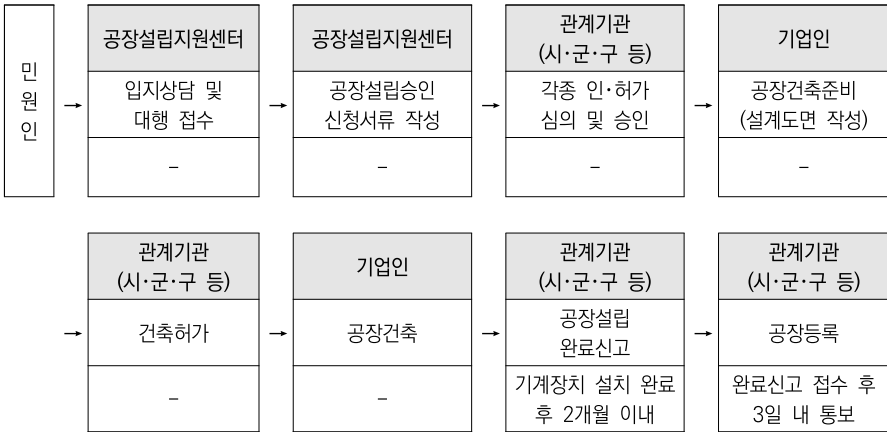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13개소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서울, 인천, 경기, 원주, 천안, 대구, 구미, 울산, 부산, 창원, 광주, 군산, 광양

2) 공장설립지원서비스

- 공장설립 입지선정 상담 및 공장설립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자
 - (지원업무) 공장입지 검토 및 설립절차 상담,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상담 및 서류작성 대행, 기타 공장설립 관련 제반업무 안내

공장설립지원서비스 절차
• (대행의뢰)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업무의 대행을 의뢰
• (대행신청) 관할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대행 업무에 착수하여 공장설립 관련 서류 작성 및 민원신청(관할 지자체 접수)
• (검토승인) 지자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는 관련 법령 등 검토 후 공장설립 승인

3) 대행업무 처리절차



4)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 운영

-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
 - 공장설립 승인 업무
 -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
 -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Ⅱ. 공장설립 규제 및 허용행위

1. 공장총량제도

(1) 수도권의 공장입지 제한

-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함(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구 분	수도권 권역의 구분 및 행위제한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행위제한	•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 공업지역의 지정 •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등 예외 가능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행위제한	•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 •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행위제한	•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가능

※ 행위제한 완화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제27조의2·제27조의3·별표1·별표2·별표3

■ 수도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 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 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연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 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송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하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개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전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 기술리·내강리만 해당)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3. 용인시(김광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 ·맹리·두창리만 해당)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 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울곡리·내장리· 배태리만 해당)

(2) 총량규제

□ 목적과 법적근거(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음

□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2018년~2020년)

(단위 : 천㎡)

구 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총허용량	5,445	36	558	4,851
산업단지와외 공업지역	1,982	25	502	1,455
개별입지	3,463	11	56	3,396

□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15~17)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전망 등을 감안하여 산정

□ 집행조건

대 상	• 건축물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
적용기준	•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 • 시·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안됨
제 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2.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 공장입지 기준고시 별표 2, 2018.9.17.

(1)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전용주거지역 (제1종·제2종)	○ 공장설립 불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 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준주거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심상업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 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일반상업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상업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유통상업지역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전용공업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일반공업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준공업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보전녹지지역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생산녹지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 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연녹지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2) 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보전관리지역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생산관리지역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음·면지역에 건축하는 제 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및 도계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계획관리지역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 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 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별표 19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 -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3)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농림지역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다만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자연환경보전지역	○ 공장설립 불가

(4) 시가화조정구역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지정 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를 초과할 수 없음)과 부대시설의 설치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함) ○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변경 행위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5) 기타 용도지역·지구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의 시설 등을 건축하는 행위 ○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 농산물·임산물·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 ○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m 미만인 어선을 건조 및 수리하는 조선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동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자연취락지구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6) 기타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름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 공장설립 불가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제32조제1항, 시행령 제29조)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 허용 -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樹實)·대나무·버섯에 한함]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농업보호구역 (농지법 제32조제2항, 시행령 제30조)	☐ 공장설립불가

3.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 공장입지 기준고시 별표1, 2018.9.17.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면적률 (%)
1011	도축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2
		10112	가금류 도축업	12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2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12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류 제외)	12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5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5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5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10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
1050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2
		10612	곡물 제분업	12
		10613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12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세분류)	면적률 (%)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1	떡류 제조업	15
		10712	빵류 제조업	15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2
1072	설탕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2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5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2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2
		10743	장류 제조업	12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2
107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15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5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1	커피 가공업	10
		10792	차류 가공업	10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
		107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2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0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2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2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2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12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2
1111	발효주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0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0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0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0
		11122	소주 제조업	10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0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12
		11202	생수 생산업	10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0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면적률 (%)
1200	담배 제조업	12000	담배제품 제조업	15
1310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1	면 방직업	12
		13102	모 방직업	12
		13103	화학섬유 방직업	12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2
		13109	기타 방직업	12
1321	직물 직조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2
		13212	모직물 직조업	12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5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5
1322	직물제품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0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0
		13223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0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5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0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0
1330	편조 원단 제조업	13300	편조 원단 제조업	15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5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5
		13403	날염 가공업	15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
1391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0
1392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5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15
1399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5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2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5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5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0
1411	겉옷 제조업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20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면적률 (%)
		14112	여자용 겹옷 제조업	20
1412	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20
1413	한복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20
1419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20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20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20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20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20
1420	모피제품 제조업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15
1430	편조의복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5
1441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5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5
1449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20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20
1511	모피 및 가죽 제조업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15
1512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20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20
151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20
1521	신발 제조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20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20
1522	신발 부분품 제조업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20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101	일반 제재업	5
		16102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5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5
1621	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15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5
162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1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0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0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면적률 (%)
1623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0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10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10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0
		16299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0
163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2
1711	펄프 제조업	17110	펄프 제조업	3
1712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0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0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0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0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10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0
1721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17211	골판지 제조업	15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15
1722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5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5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5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5
1790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5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5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5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5
1811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20
		18112	스크린 인쇄업	20
		18113	오프셋 인쇄업	20
		18119	기타 인쇄업	20
1812	인쇄관련 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20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면적률 (%)
		18122	제책업	20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20
1820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15
1910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3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3
192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0
1922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3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3
2011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3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10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3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7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3
2013	무기 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3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12
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7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7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7
2031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7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7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10
2032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12
		20322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12
2041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12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12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면적률 (%)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12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12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2
		20423	화장품 제조업	12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12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12
		20492	가공 및 정제업 제조업	10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12
2049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3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12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12
2050	화학섬유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12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12
2110	기초 의약품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12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2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2
2122	한의학약품 제조업	21220	한의학약품 제조업	12
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2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2
2211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12
		22112	타이어 재생업	12
2219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15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15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 제품 제조업	15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15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12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12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12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12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세분류)	면적률 (%)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2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12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12
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15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5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5
2225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12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12
2229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15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15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2
2311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11	판유리 제조업	12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12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12
2312	산업용 유리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12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12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12
231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12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12
		23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12
2321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0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0
2322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12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12
		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12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면적률 (%)
2323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5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5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5
233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3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3
2332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3
		23322	레미콘 제조업	3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10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3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3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
2391	석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3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3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3
		23992	연마재 제조업	10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10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0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3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24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4111	제철업	12
		24112	제강업	12
		24113	합금철 제조업	7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3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7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12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면적률 (%)
		24123	철강선 제조업	12
2413	철강관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10
		24132	강관 제조업	12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12
2419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12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12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2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2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2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3
2431	철강 주조업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12
		24312	강 주물 주조업	12
2432	비철금속 주조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12
		24322	동 주물 주조업	12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12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12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12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12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12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12
2512	산업용 난방 보일러, 금속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12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12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세분류)	면적률 (%)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12
2513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12
252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3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12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12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12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12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12
		25922	도금업	20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0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12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12
25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15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12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12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15
2594	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12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12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12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12
259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12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12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12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12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12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2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면적률 (%)
261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0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0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10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10
2621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12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12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12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12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2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2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12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12
		26292	전자 저항기 제조업	12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10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12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12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12
2631	컴퓨터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12
2632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12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12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12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12
264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2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12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12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12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면적률 (%)
2651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12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12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 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12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12
266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12
2711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 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15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15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15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 업	15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15
		27194	의료용 가구 제조업	15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5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15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15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15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15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15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0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 기 제조업	15
2730	사진장비 및 광학기 기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15
		27302	사진기, 영상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15
		27309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15
274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2740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15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12
		28112	변압기 제조업	12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면적률 (%)
		28113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12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12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12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12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12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12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12
		28202	축전지 제조업	12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15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15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15
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12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12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12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12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12
2851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15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15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0
2852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15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0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15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0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2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12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12
2912	유압 기기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12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0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세분류)	면적률 (%)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0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15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12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12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15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10
		29162	승강기 제조업	12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12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12
2917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0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0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15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12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12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 업	7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12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7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12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15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0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12
2922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15
		29222	디지털 적응 성형기계 제조업	15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15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15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15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세분류)	면적률 (%)
2923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15
2924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10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10
2925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15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15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 조업	15
29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 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5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5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5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15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15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15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15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5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12
3012	자동차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12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 조업	12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10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10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10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부품 제조업	12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부품 제조업	12
3033	자동차용 부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 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부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12
		30332	자동차용 부품 전기장치 제조업	12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세분류)	면적률 (%)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12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12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15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12
304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12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7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7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7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7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7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12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12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5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5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
3192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10
31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10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15
3201	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32011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15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15
3202	목재 가구 제조업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15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15
3209	기타 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15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15
331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7
3312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20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세분류)	면적률 (%)
3320	악기 제조업	33201	건반 악기 제조업	15
		33202	전자 악기 제조업	15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15
3330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12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12
		33303	낚시 및 수렵용품 제조업	12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2
3340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20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20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20
3391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20
3392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12
3393	가발, 장식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0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12
		33933	표구 처리업	20
33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20
		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7
		33993	비 및 솔 제조업	20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10
3401	일반 기계류 수리업	34011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
		340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0
3402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34020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20